

##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### □ 민원 제목 :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외국인 차별금지 요구

#### □ 신청 취지

- 민원인은 서울특별시 △△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30%의 할인을 받고 있는데 민원인의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남편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△△구민으로 볼 수 없고, 할인혜택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않으니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

#### 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서울특별시 △△구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은 주민등록 의무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거소 등 기록·관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△△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

#### □ 사실관계

- 주민등록법 소관 행정안전부(주민과) 질의회신 결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배우자로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인에 대한 거소 등 기록, 관리에 목적이 있는 것임
- △△△변호사 자문결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해 주는 제도에 불과할 뿐 이러한 등재로 인하여 해당 외국인이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

#### □ 관계 법령 등
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
- 서울특별시 △△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 (수강료 할인 별표 3)

#### □ 판단 및 결론

- 행정안전부(주민과) 질의와 3명의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배우자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외국인에 대한 거소 등 기록·관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'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'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
- 따라서 △△구청 담당자가 「△△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7조 제3항에 따른 민원인의 남편에 대해 할인혜택 적용을 배제한 사항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음
- 그러나 동 조례 별표3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△△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」에서 규정하는 '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등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'라는 규정과 상충되고, 외국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하게 차별대우할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- 따라서 「△△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7조 제3항의 별표3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종로구청에 '의견표명' 하고자 함